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외 장

제45호 2016. 10. 28(금)

고시

- 남원시 고시 제 2016 - 155호 주천면 응치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 1
- 남원시 고시 제 2016 - 156호 지적측량기준점 폐기 고시 ----- 2
- 남원시 고시 제 2016 - 15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7

광고

- 남원시 광고 제2016 - 1321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8
- 남원시 광고 제2016 - 1345호 도로지정공고 ----- 26
- 남원시 광고 제2016 - 1348호 도로지정공고 ----- 27

회 람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 고시 제 2016 - 155호

주천면 응치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응치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남 원 시 장

1. 사업명 : 주천면 응치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승인

2. 사업목적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1,257백만원 (국비 900백만, 지방비 309백만, 자부담 48백만)

4. 주요사업내용

- 주택정비 : 지붕개량, 노후주택개선사업, 빈집정비 등
- 마을경관개선 : 담장정비, 주차장조성, 안내판설치, 경노당리모델링 등
- 생활인프라구축 : 안길정비, 상수도설치, 마을공동체활성화시설, CCTV등
-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5.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6. 사업기간 : 2016. 10. ~ 2018.12.(3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축과(063-620-65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고시 제 2016 - 156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지적측량기준점 중 폐기기준점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점수: 총160점 (지적도근점: 160점 폐기)

나. 고시내용: 별첨

다. 성과보관장소: 지적서고

2016. 10 . .

남 원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폐기 목록

연 번	도근점 명 칭	번호	좌 표		토지소재	상세주소
			X	Y		
1	도근점	281	215497.95	247387.01	25029-서천리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산3-5
2	도근점	282	215454.88	247536.57	25029-서천리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317-3
3	도근점	288	215308.44	247901.51	25029-서천리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498번지
4	도근점	290	215228.74	248002.44	25026-동천리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462-1번지
5	도근점	298	215233.74	248249.39	25026-동천리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454-2번지
6	도근점	299	215301.41	248220.15	25026-동천리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586번지
7	도근점	300	215305.16	248319.77	25026-동천리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407-3번지
8	도근점	302	215408.77	248492.64	25026-동천리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412-2
9	도근점	303	215389.32	248407.97	25026-동천리	전라북도 남원시 동천리 589-1
10	도근점	304	215361.24	248336.11	25026-동천리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586번지
11	도근점	310	215683.62	248295.01	25029-서천리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96-4번지
12	도근점	316	216039.65	248511.48	25028-북천리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80-2
13	도근점	321	216085.75	248598.51	25028-북천리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85-2
14	도근점	328	215988.7	248305.08	25028-북천리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521번지
15	도근점	331	215783.74	248181.11	25029-서천리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44-2번지
16	도근점	336	215421.13	247709.03	25029-서천리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494
17	도근점	341	215432.24	248039.75	25029-서천리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498번지
18	도근점	342	215429.74	248046.94	25029-서천리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498번지
19	도근점	343	215403.79	248078.7	25029-서천리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498번지
20	도근점	345	215435.04	248178.71	25029-서천리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180-1번지
21	도근점	351	215400.02	248246.28	25026-동천리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586번지
22	도근점	353	215678.36	248343.92	25026-동천리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586번지
23	도근점	361	215671.93	248162.06	25029-서천리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498번지
24	도근점	363	218195.08	254879.71	47022-인월리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23-2
25	도근점	366	218381.88	254761.28	47023-서무리	남원시인월면서무리688-26
26	도근점	373	218231.96	254129.95	47023-서무리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719-3
27	도근점	374	218200.3	254036.01	47023-서무리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723-2
28	도근점	376	218139.31	254249.41	47023-서무리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739-5
29	도근점	377	218116.76	254314.61	47023-서무리	인월면 서무리 738-14
30	도근점	379	218178.7	254822.78	47022-인월리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21-2
31	도근점	380	218160.01	254768.23	47022-인월리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645-16
32	도근점	381	218135.93	254717.72	47022-인월리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34-3번지
33	도근점	382	218128.61	254663.72	47022-인월리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36-3
34	도근점	383	218096.88	254585.57	47022-인월리	인월면 인월리 254-1

35	도근점	384	218082.89	254529.68	47022-인월리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49-2
36	도근점	385	218084.74	254544.93	47022-인월리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51-2번지
37	도근점	386	218045.48	254553.28	47022-인월리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49-5
38	도근점	389	217880.85	254802.11	47022-인월리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180-5번지
39	도근점	390	217854.95	254928	47022-인월리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197-2번지
40	도근점	394	218082.9	254529.64	47022-인월리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49-2
41	도근점	395	218050.02	254606.52	47022-인월리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42-4번지
42	도근점	396	218027.6	254685.82	47022-인월리	239-16
43	도근점	398	218064.49	254445.82	47022-인월리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69-12
44	도근점	399	218015.35	254487.91	47022-인월리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641-32
45	도근점	400	218234.07	254510.09	47023-서무리	인월면 서무리 698-7
46	도근점	401	218181.98	254510.09	47022-인월리	인월면 인월리 253-4
47	도근점	407	218241.64	254684.87	47023-서무리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688-47
48	도근점	410	218452.37	254317.88	47023-서무리	626-3
49	도근점	411	218500.92	254420.5	47023-서무리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41-2
50	도근점	414	205585.76	249841.53	46028-덕동리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593-3
51	도근점	419	205859.42	250321.98	46028-덕동리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308-1
52	도근점	422	206269.5	250730.65	46028-덕동리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280-1
53	도근점	427	207174.4	250816.5	46028-덕동리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779
54	도근점	436	207347.38	251481.89	46028-덕동리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83-1
55	도근점	437	207500.09	251594.57	46028-덕동리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72
56	도근점	446	208283.51	252564.39	46027-부운리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246
57	도근점	448	208582.8	252682.22	46027-부운리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661
58	도근점	454	207342.14	250708.33	46028-덕동리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796-5
59	도근점	455	207377.49	250702.26	46028-덕동리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786
60	도근점	456	206355.75	227679.28	35021-옹정리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424-1
61	도근점	459	206560.7	227649.93	35021-옹정리	금지면 옹정리 1351-1
62	도근점	461	206664.52	227750.15	35021-옹정리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195-1
63	도근점	464	206820.26	227689.4	35021-옹정리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155-4
64	도근점	465	206837.84	227639.63	35021-옹정리	156-10
65	도근점	466	206869.72	227643.2	35021-옹정리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156-3
66	도근점	474	206689.1	227410.39	35021-옹정리	834-1
67	도근점	478	206473.6	227609.51	35021-옹정리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244
68	도근점	480	206384.92	227572.17	35021-옹정리	남원시금지면옹정리761-14
69	도근점	485	206695.45	226710.49	35022-입암리	490-2
70	도근점	487	206378.13	226722.54	35022-입암리	1363-3
71	도근점	493	206463.41	226489.07	35022-입암리	872-1
72	도근점	496	206439.16	226374.13	35022-입암리	904-2
73	도근점	505	222844.4	255061.25	45024-갈계리	아영면 갈계리 25-6
74	도근점	506	222923.6	255087.35	45024-갈계리	남원시 아영면 갈계리 24-2번지
75	도근점	507	222938.16	255110.79	45024-갈계리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갈계리 24-1
76	도근점	508	222969.08	255094.62	45025-청계리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57-21
77	도근점	511	223100.62	255154.7	45025-청계리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439
78	도근점	512	223116.35	255249.67	45025-청계리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439

79	도근점	513	223129.58	255348.76	45025-청계리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439
80	도근점	514	223133.6	255411.37	45025-청계리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32-2
81	도근점	515	223216.47	255435.35	45025-청계리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93-3
82	도근점	516	223310.49	255471	45025-청계리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438
83	도근점	519	223541.22	255375.98	45026-월산리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827-11
84	도근점	536	222284.88	232699.09	38027-오신리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642-1
85	도근점	537	222309.22	232705.4	38027-오신리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842-8
86	도근점	547	222398.23	232635.73	38027-오신리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842-1
87	도근점	551	213366.09	256779.87	46023-대정리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660-2
88	도근점	557	213559.51	256545.23	46023-대정리	776-1
89	도근점	562	213629.74	257065.73	46023-대정리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642-13
90	도근점	568	213617.55	256599.46	46023-대정리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577-3
91	도근점	569	216691.17	233798.25	11300-광치동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동 633-5
92	도근점	570	216747.07	233790.18	11300-광치동	남원시 광치동 561-10
93	도근점	571	216810.61	233835.16	11300-광치동	남원시 광치동 813
94	도근점	574	216931.91	233847.22	11300-광치동	남원시 광치동 813
95	도근점	576	217020.83	233780.37	11300-광치동	남원시 광치동 576-1
96	도근점	579	216923.45	233893.43	11300-광치동	남원시 광치동 605-27
97	도근점	580	216905.22	233870.94	11300-광치동	남원시 광치동 818
98	도근점	581	216875.6	233866.42	11300-광치동	남원시 광치동 818
99	도근점	584	216238.22	233409.6	11300-광치동	남원시 광치동 708-52
100	도근점	593	210130.44	240317.26	31026-장안리	주천면 장안리 585
101	도근점	597	210077.23	240347.67	31026-장안리	주천면 장안리 245-3
102	도근점	598	206131.15	230532.46	33027-송기리	남원시 송동면 송기리 417-2
103	도근점	599	206171.08	230506.35	33027-송기리	남원시 송동면 송기리 419-1
104	도근점	600	206249.87	230528.86	33027-송기리	남원시 송동면 송기리 372-1
105	도근점	601	206288.97	230528.13	33021-신평리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186-3
106	도근점	602	206333.25	230524.75	33021-신평리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185-2
107	도근점	603	206267.19	230554.87	33021-신평리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174-2
108	도근점	604	206210.8	230590.36	33021-신평리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170-2
109	도근점	607	205557.6	220728.1	36028-사석리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863
110	도근점	609	205451.42	220714.97	36028-사석리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711-3
111	도근점	611	205326.23	220666.83	36028-사석리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731-6
112	도근점	613	214674.3	229458.22	37026-운교리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606-1
113	도근점	616	214750.24	229388.93	37026-운교리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605-1
114	도근점	617	214812.26	229367.2	37026-운교리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915
115	도근점	618	214833.94	229324.69	37026-운교리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922
116	도근점	619	214917.09	229280.29	37026-운교리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915
117	도근점	620	214978.72	229203.15	37026-운교리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915번지
118	도근점	625	223658.37	236490.08	40025-신파리	887-3
119	도근점	626	223707.35	236409.47	40025-신파리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894-2
120	도근점	628	223772.76	236367.36	40025-신파리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904-43
121	도근점	629	223808.34	236370.11	40025-신파리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904-35
122	도근점	630	223803.49	236481.73	40025-신파리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960-3

123	도근점	631	223773.93	236474.4	40025-신평리	남원시 보절면 신평리 878-1
124	도근점	632	223768.43	236421.77	40025-신평리	남원시 보절면 신평리 875-5
125	도근점	791	217080.68	233797.14	11300-광치동	남원시 광치동 592-3
126	도근점	808	211333.64	233821	10600-금동	308-1
127	도근점	809	211273.22	233707.43	10600-금동	남원시 금동 334-1
128	도근점	814	210523.59	233008.69	33000-송동면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1101-28
129	도근점	816	210904.04	233333.22	10700-조산동	남원시 조산동 175-4
130	도근점	818	210692.34	233151.2	10700-조산동	남원시 조산동 157
131	도근점	820	210754.65	233233.86	10700-조산동	남원시 조산동 154-7
132	도근점	821	210795.63	233268.35	10700-조산동	남원시 조산동 174-6
133	도근점	845	211154.48	233385.65	10700-조산동	남원시 금동 589
134	도근점	846	211168.56	233516.4	10700-조산동	남원시 금동 589
135	도근점	847	211178.89	233594.81	10700-조산동	남원시 금동 589
136	도근점	848	211194.8	233690.86	10700-조산동	남원시 조산동 580-47
137	도근점	7727	209871.23	233836.66	12100-노암동	전북 남원시 노암동 산64
138	도근점	7733	210109.43	234124.81	12100-노암동	전북 남원시 노암동 산50-4
139	도근점	7750	213959.63	237001.69	11700-월락동	전북 남원시 월락동 5-28
140	도근점	7751	213963.27	237025.28	11700-월락동	전북 남원시 월락동 5-8
141	도근점	3367	214210.92	239373.35	42023-서곡리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612
142	도근점	3369	214284.61	239446.76	42023-서곡리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609
143	도근점	3371	214252.22	239533.76	42023-서곡리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611
144	도근점	5315	210062.31	237030.87	31023-송치리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1273
145	도근점	5329	209974.99	237169.35	31023-송치리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1277
146	도근점	5340	210136.31	237112.17	31023-송치리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1276
147	도근점	6757	209743.73	234564.27	12100-노암동	남원시 노암동 846
148	도근점	6760	209784.93	233973	12100-노암동	남원시 노암동 826-3
149	도근점	6765	209704.93	234317.06	12100-노암동	남원시 노암동 846
150	도근점	6773	209578.71	234270.5	12100-노암동	남원시 노암동 845
151	도근점	6776	209534.06	234528.74	12100-노암동	남원시 노암동 845
152	도근점	6777	209621.09	234521.33	12100-노암동	남원시 노암동 845
153	도근점	7098	209819.23	233976.43	12100-노암동	남원시노암동 859
154	도근점	7106	209419.06	233849.01	12100-노암동	남원시 노암동 863
155	도근점	7109	209835.64	233845.85	12100-노암동	남원시 노암동 861
156	도근점	7110	209804.04	233789.96	12100-노암동	남원시 노암동 861
157	도근점	7113	209828.85	234127.69	12100-노암동	남원시 노암동 115-1
158	도근점	7370	214199.81	236375.59	11700-월락동	월락동 산50-1
159	도근점	7372	214227.5	236591.17	11700-월락동	월락동 227-7
160	도근점	7373	214005.01	236341.31	11700-월락동	월락동 421-1

남원시 고시 제2016 - 15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고죽동 산 64-2번지
 - 나. 사 업 량 : 3,275m²
 - 다. 사업기간 : 2016. 10. ~ 2017. 09. 30.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산동면, **** *, 최 * *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6 - 1321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안 제23조제2항)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까지 출산휴가를 허가
- 단서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 가능

나.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총무과 행정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을 “남원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성실로서”를 “성실로써”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사항으로서”를 각각 “사항으로써”로, 같은 호 중 “비밀로서”를 “비밀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획득하기”를 “받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영위하여”를 “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 이외의”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을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를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사로운”을 “개인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에”를 “내에”로, “전화·전보 그 외의”를 “전화, 그 밖의”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를 “사람의 복무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를 “겸임업무의 복무는”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를 “기관의 파견근무자의 복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하게 된”을 “해당하는 행위를 한”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복무에 관하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복무에 관한”을 “복무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이”로, “잔무처리상”을 “잔무처리를 위하여”로, “15일을 한도로”를 “15일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해서는”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공무원으로부터”를 “소속공무원으로 부터”로, “한”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인하여 휴직”을 “휴직”으로, “대하여 다음과”을 “다음과”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유로 인한”을 “사유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상으로 인한”을 “부상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하여 직무를”를 “직무를”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얻을”을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얻을”을 각각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인하여 피해”를 “피해”로,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얻을”을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을 “다른 수업휴가를 받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직기간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계산

제23조제13항제2호 중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장기재직휴가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얻은”을 “받은”으로,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를 “적은 문서를 작성 보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번에에”를 “번에”로,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 가능”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해당되지 않는”으로, “검직하고자 할 때”를 “검직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29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남원시지방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남원시 지방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u>----- -----.</p>
<p>제2조(복무선서)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u>의한다.</u></p> <p>③ (생략)</p>	<p>제2조(복무선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따른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u>성실로서</u>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p>	<p>제3조(책임완수) ----- ----- ----- ---- <u>성실로써</u> ----- -----.</p>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u>자</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u>아니 된다.</u></p> <p>1. 법령에 <u>의하여</u> 비밀로 지정된 사항</p> <p>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u>사항으로서</u>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p> <p>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p>	<p>제3조의2(비밀엄수) ----- ----- <u>사람은</u> ----- ----- ----- ----- <u>안 된다.</u></p> <p>1. ----- <u>따라</u> ----- -----</p> <p>2. ----- ---- <u>사항으로써</u> ----- ----- -----</p> <p>3. -----</p>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
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 ① (생략)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조(근검·절약) ① (생략)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
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
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
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
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

--- 사항으로써 -----

4. -----
사항으로써 -----

----- 비밀로 -----

제5조(친절·공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

받기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근검·절약) ① (현행과 같
음)

② -----
하여 -----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등 -----

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

② -----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

③ -----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 안 된다.

④ ----- 필요한 -----.

제8조(출장공무원) ① ----- 개인적인 -----.

② ----- 내에 ----- 전화, 그 밖의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생략)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

제9조(겸임근무) ① -----
----- 사람의 복무는 -----

----- . ----- 겸임업무의 복무는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파견근무) ① -----
----- 기관의 파견근무자의 복무는 -----
----- .

② -----

-- 해당하는 행위를 한 -----

----- .

③ -----

----- 복무는 -----
----- . -----

----- 복무는 -----
-----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 ①·② (생략)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2. (생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공무원이 -----
잔무처리를 위하여 -----
----- 15일의 범위에서 -----
-----.

제18조(연가일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에게 -----

1.·2.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에게 -----
----- . -----

---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소속공무원으로부터 -----

-- 경우 -----.

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생략)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 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른 -----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

----- 부상에 따른 -----

-----.

- 1. -----
직무를----- 경우
- 2. 감염병-----
----- 경우

② -----

----- 필요로 하는 -----
-----.

③ -----
----- 붙여야 -----.

제23조(특별휴가) ① -----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간 동안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을 고용 계약하여 충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담당·주무급 이상의 자는 제외)

- 받을 -----.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 5. (생략)

⑥ ~ ⑧ (생략)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

③ -----

----- 받을 -----

④ -----

----- 받을 -----

⑤ ----- 유산 -----

1. ~ 5.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 피해를 -----

5일 이내 -----
----- 받을 -----

⑩ -----

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⑫ (생략)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얻은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휴가허가 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의2(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 따른 수업휴가를 받을-----.

⑪·⑫ (현행과 같음)

⑬ -----
----- . -----
-----.

1. 재직기간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계산

2. -----

-- 장기재직휴가 신청

3. -----
----- 받은
은 -----

----- 적
은 문서를 작성 보관

4. -----

- 번에 ----- 사용 가능

제27조의2(겸직허가) ① -----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해당되지 않는 -----
----- 겸직하려는 경우 -----
-----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시행규칙) -----
필요한-----
-.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남원시 공고 제 2016 -1345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6-2 1	남원시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300-8(전)	이*선	2016-건축과- 신축신고-391	59	4	240	남 원 시 운 봉 읍 주 촌 리 300-8	240	박*임 용*희 야*선 야*란 강*진 야*수 김*양 옥*호 야*연 박*태 배*녀 박*진

◎ 남원시 공고 제 2016 - 1348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6-2 0	남원시 식정동 산54-3(임)	양*호	2016-건축과- 신축신고-387	89.8	6	540	남 원 시 식 정 동 산 54-3	540	양*호